

#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6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6월 15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

###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 민·관 협력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무한돌봄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록 함(안 제5조).

- 라.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및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손해배상, 원상복구,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 바. 무한돌봄센터는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함(안 제22조).
- 사. 무한돌봄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는 그 역할이 다른데 구성위원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그렇게 생각함.
○ 네트워크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 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 등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재원과 정보가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복지 영역이 강화되어야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짐. 센터는 물론 네트워크팀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배치가 필수적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p>	<p>○ 실질적인 시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음.</p>

####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없음
- 나. 찬성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무한돌봄센터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부천시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탁·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탁·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부천시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부천시무한돌봄센터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인 경우 운영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솔루션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22조(보고)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595호
의결 년월일	2010. 6. 18 (제161회)

제출년월일 : 2010. 6.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 민·관 협력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무한돌봄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무한돌봄센터의 조직 및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손해배상, 원상복구,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바. 무한돌봄센터는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함(안 제22조).

사. 무한돌봄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부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무한돌봄센터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부천시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

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탁·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탁·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관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부천시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부천시무한돌봄센터솔루션위원회(이하 “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인 경우 운영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솔루션위원회는 무한돌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22조(보고)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